

4.1.9 포상규정

제정 1996. 06. 19.

개정 2018. 01. 25.

개정 2022. 02.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공로상, 모범상, 근속포상, 정년·명예·특별퇴직 포상, 강의 우수교원 포상, 학술상 포상, 제안상, 교육상 포상, 논문상 포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02.03.>

제3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본 대학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교직원, 기관, 단체 및 개인(외국인 포함)에게 본 대학교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포상한다. <개정 2022.02.03.>

1. 공로상: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많은 사람 또는 재해·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2.02.03.>
2. 모범상: 맡은바 직무에 근면·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2.02.03.>
3. 근속포상: 본 대학교에 근속한 사람.(다만, 직원의 경우는 법인, 산하학교 경력 포함) <개정 2022.02.03.>
 - 가. 10년 근속포상
 - 나. 20년 근속포상
 - 다. 30년 근속포상
4. 정년·명예·특별퇴직 포상: 본 대학교에서 정년·명예·특별퇴직 할 경우로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신설 2022.02.03.>
5. 강의 우수교원 포상: 교원업적평가의 수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 <신설 2022.02.03.>
6. 학술상 포상: 연구와 저술 및 창작활동 등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원 <신설 2022.02.03.>
7. 제안상: 새로운 업무 아이디어 등 제안을 통해 재당 제안제도운영이 탁월한 교직원 <신설 2022.02.03.>
8. 교육상 포상: 교육부분에서 뛰어난 업적을 통해 학교발전에 기여한 교원 <신설 2022.02.03.>
9. 논문상 포상: 인용지수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교원 <신설 2022.02.03.>

제3조의2(포상시기) 포상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상, 논문상, 교육상, 공로상, 모범상, 근속포상: 개교기념일(다만 정년(명예·특별)퇴직예정자가 근속포상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정년(명예·특별)퇴직일)
2. 정년(명예·특별)퇴직 포상: 정년(명예·특별)퇴직일
3. 강의 우수교원 포상: 학년말
4. 수시포상: 사유발생시
<조항 신설 2022.02.03.>

제3조의3(포상내용) 포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
2. 모범상: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
3. 근속포상: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

4. 정년(명예특별)퇴직포상: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
 5. 강의 우수교원 포상: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
 6. 학술상 포상: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
 7. 교육상 포상: 표창장과 소정의 포상금
 8. 논문상 포상: 표창장과 소정의 상금
- 〈조항 신설 2022.02.03.〉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이사장, 총장이 행한다. 〈개정 2022.02.03.〉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2.02.03.〉

- ② 전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02.03.〉
- ③ 제3조제1호의 본 대학교 근속자(정년퇴직자)에 대한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상품과 함께 수여한다. 〈개정 2018.01.25., 2022.02.03.〉
 1. 삭제 〈2018.01.25〉
 2. 10년 근속자 은수저 2벌 〈개정 2018.01.25〉
 3. 20년 근속자 금 5돈 중 〈개정 2018.01.25〉
 4. 30년 근속자 금 10돈 중 〈개정 2018.01.25〉

제6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본 대학교 교직원을 포상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각 처·실장 및 부속기관장이 총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2.02.03.〉

- ② 본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개인이나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포상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교원은 교무처로 직원은 사무처로 심사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3.〉

제7조(포상기회의 공정) ①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3.〉

- ②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개정 2022.02.03.〉

제8조(포상 결정) ① 포상은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례적인 근속포상과 정년(명예·특별)퇴직포상에 대하여는 각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상위직 보다는 하위직을, 단기근무자보다는 장기근무자를 우선한다.
- 〈조항 신설 2022.02.03.〉

제9조(포상 결격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포상하고자 하는 연도에 징계위원회 서류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결정된 사람
 2.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 〈조항 신설 2022.02.03.〉

제10조(업무주관) 포상에 관한 업무는 교원은 교무처, 직원은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신설 2022.02.03.〉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03일로부터 시행한다.

포 상 명

직 성명

(포상문)

년 월 일

학교법인초당학원이사장 ○ ○ ○
초 당 대 학 교 총 장 ○ ○ ○

직 인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조 서					
주 소					
소 속		직급 및 직위		성 명	
근무기간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주 요 경 력			과 거 포 상 기 록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포 상 내 용	
공 적 사 항					
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 천 자 직 위 : 성 명 : (인)					
초당대학교총장 귀하					